

옥천중학교-27

옥천중학교 학칙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옥천중학교장 이 성 희 (학교장서명)

2023년 4 월 14 일

옥천중학교 학칙 개정 규정

옥천중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중학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옥천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81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수업연한 및 학년, 학기,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학년, 학기)

- ① 학년을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1학년은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한다.

제7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9월 20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또는 기간
 7. 토요일 휴업일 : 매주 토요일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의 휴가기간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8조(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충청북도 육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45조 제2호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1/10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고사)

- ① 매 학기별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학년은 자유학기제로 2학기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과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5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12조(수료, 졸업)

- ①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 편입학, 전학 및 재취학

제14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5조(입학시기)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6조(입학결정) 본교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69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7조(재·전·편입학)

- ① 본교에의 재·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 ② 제1항의 배정자 중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다른 본교허용인원은 옥천군 재·전·편입학업무 시행계획에 의한다.

제18조(입학서류)

-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19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서약서) 입학(전·편입학 및 재취학 포함)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인)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제22조(타교전학)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학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휴학, 취학의무 면제, 유예 및 상·별

제23조(취학의무의 유예)

-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24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 ① (구성)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기관관계자 중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② (역할) 취학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옥천중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붙임1]에 따른다.

제25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를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1이상 장기 결석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학칙 제25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학칙 제25조 제2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 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④ 취학의무 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 여부를 파악하고 관계 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26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27조(징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와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학교폭력전담 기구에서 처리한다.

제8장 조기진급·졸업 및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8조(조기진급, 조기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로서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 자유학기제 실시 학년도인 경우, 학업성취도가 있는 학기를 활용

자유학년제 실시로 인하여 직전 학년도 학업성취도가 없는 학생의 경우 국어, 사회(역사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로 교과목별 이수인정

- 평가에서 전 과목 모두 90점 이상을 받은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픽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참가 예정인 자

②(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세부 절차)

1.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2.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제2조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3.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 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준하는 조기졸업 및 자격부여 이수평가를 거쳐야 함
 - 나.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다.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 라.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 인정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야 함
4.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5.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 가능하다.

③(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로서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 * 자유학기제 실시 학년도인 경우, 학업성취도가 있는 학기를 활용
 - 자유학년제 실시로 인하여 직전 학년도 학업성취도가 없는 학생의 경우 국어, 사회(역사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전 과목 모두 90점 이상을 받은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④(상급학교 조기입학 절차)

1. 제4조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시행한다.
3.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한다.
4.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⑤(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 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 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에 의거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4. 위원회는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붙임2]으로 정한다.

제9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29조(학업중단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0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

(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④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10장 학생생활규정

제31조(학생생활규정)

- ① (명칭) 이 규정은 ‘옥천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 ② (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학생의 권리)
 1.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3.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5.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7.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8.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9.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1.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④ (학생의 의무)

1.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4.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학생자치활동)

1. 학급회

가. (운영목표)

- 1)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한다.
- 2)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과 함께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 3)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가지게 한다.
- 4)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자유와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나. (운영방침)

- 1) 학급회 토의 주제는 학생회에서 주별로 주제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 2) 학급회의에서 학급 체험활동, 봉사활동, 공동체의식 함양활동 등 다양한 학급 활동을 추진한다.

다. (조직과 임무) 학급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된 학급회의 조직과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역할 분담은 학생회 조직과도 연계시켜 학급과 학생회 간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 1) 조직은 반장, 부반장, 기획운영부, 행사놀이부, 바른생활부, 깔끔선도부, 홍보미디어부로 구성한다.
- 2) 반장은 학급회의를 관장하고 학생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한다.
- 3)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기획운영부는 학급회의 진행 보조 (서기, 협의록 작성), 학급 제반 사업 계획, 문서 관리, 학급 예산 관리 등을 맡는다.
- 5) 행사놀이부는 소풍,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체육활동, 학급잔치, 오락회 등 각종 행사 기획·추진을 맡는다.
- 6) 바른생활부는 용의 및 복장지도, 수업시간 예절지도, 식사지도, 출결석 관리, 교통안전 및 질서지도와 바람직한 학교문화, 생활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맡는다
- 7) 깔끔선도부는 절약, 폐휴지 수집 및 분리수거, 봉사 위문활동, 청소 및 환경미화, 학급 비품관리, 위생 및 보건활동, 교내 행사 시 청소 협조 등을 맡는다.

- 8) 홍보미디어부는 학급회 사업의 홍보 활동, 게시판 관리, 학급신문 학급문집 발간, 학급 단독방 관리, 학급 UCC 제작 등 미디어 관련 행사 기획·추진을 맡는다.

라. (학급회 간부)

- 1) 학급회 간부는 반장, 부반장으로 하며, 각 학급에서 선출된 간부는 학교장이 임명한다.
- 2) 학급 내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학급 간부로 임무 수행이 지극히 곤란하다고 청원을 해왔을 경우, 또는 학급 간부로서의 임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학급 담임을 배석시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격정지가 결정되면 재선출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마. (활동내용)

- 1) 토론과 집단 사고로 즐거운 교실 만들기를 전개한다.
- 2) 학급 단합대회, 학급별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급행사를 추진한다.
- 3) 학급 신문, 학급 문집 제작 등을 통해 학급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전개한다.
- 4) 학급 생활을 자율 규제하며 머물고 싶은 교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다.

2. 학생회

가. (명칭) 본회는 ‘옥천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나. (목적) 본회는 학생의 본분을 준수하고 건전한 교풍과 전통 수립을 위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하며 아울러 학생의 취미활동과 특기 등 기능을 개발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 (운영) 학교 활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생회를 두고 학생회의 실무추진을 위해 분과협의회를 둔다.

라.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마. (권리와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바. (운영지도) 본회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주시민자치부의 지도를 받는다.

사. (기능)

1)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가)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나) 정서함양, 심신 수련을 위한 제반 활동

다)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라) 각종 봉사 활동

마)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바)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

2)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3) 동 조의 활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아. (학생회 임원의 임기, 선출, 직무)

- 1) 학생회의 임원은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2,3학년 각 1인), 각부의 부장 및 차장 1인으로 구성한다.
-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이 궐위될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 3)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별도의 선거 규정[붙임3]에 의하여 선출한다.
 - 나) 회장 및 부회장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다) 각부의 부장과 차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 추천서를 바탕으로 학생회장, 부회장이 지명하여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한다.
- 4) 학생회 임원(학생회 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은 학급회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
- 5)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 관장한다.
 - 라) 기획운영부장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자. (부서) 학생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1) 기획운영부는 학생회의 진행 보조(서기, 협의록 작성), 학생회 제반 사업계획, 문서관리, 학생회 예산 관리 등을 맡는다.
- 2) 행사놀이부는 교내 체육대회, 축제 및 수련활동 준비 및 운영계획 주관, 행복키움 놀이문화 조성 활동 등 각종 행사 기획·추진을 맡는다.
- 3) 바른생활부는 용의 및 복장지도, 수업시간 예절지도, 식사지도, 교통안전 및 질서지도와 바람직한 학교문화, 생활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맡는다
- 4) 깔끔선도부는 절약, 폐휴지 수집 및 분리수거, 봉사 위문활동, 청소 및 환경미화, 학생회 비품관리, 위생 및 보건활동, 교내 행사 시 청소 협조 등을 맡는다.
- 5) 홍보미디어부는 학생회 사업의 홍보 활동, 학생회 게시판 관리, 학생회 소식지 발간, 학생회 단톡방 관리, 학생회 UCC 제작 등 미디어 관련 행사 기획·추진을 맡는다.

차. (임원자격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 1) 징계기준표[별첨2]에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카. (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 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1) 구성

가)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학생회 임원과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나) 학생회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2) 기능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나)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다)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라)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가)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개최한다.

나) 정기총회는 매월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1/2이상 또는 대의원 1/2이상이 요구할 때 그리고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 대의원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라)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타.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파. (운영위원회)

1)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과 차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나) 사업계획

3. 동아리

가.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학교와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동아리활동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 및 방과 후 학교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추대할 수 있다.

4) 학교장이 허락한 동아리는 각종행사 (예술제, 학교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학생생활)

1. 교내생활

가. (학습 참여)

1)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

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 2)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 3)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4)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5)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나. (교우 관계 및 이성교제)

- 1)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2)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가)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나)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성교육 담당교사(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다)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 라)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다. (시설이용 및 환경)

- 1)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2)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해야 한다.
- 3)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라.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1)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2)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바.(소지품 검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마. (휴대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소지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 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한 학생은 등교 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종례

시간에 돌려받는다.

나) 부득이한 경우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 휴대전화기(공기계 포함)를 소지 또는 수업 중 꺼내 놓거나 확인, 사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교사는 회수하여 보관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라) 휴대전화는 시험 중에 절대로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마) 게임기, 동영상 관련 기기 제품(태블릿 포함)은 교내에서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다. 단, 수업에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교사의 허락하에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다.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은 소지할 수 없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는 소지할 수 없다.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7) 주류, 부탄가스, 분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는 소지할 수 없다.

8) 담배 관련 물품 및 담배류를 소지할 수 없다.

9) 차량 및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은 소지 및 사용할 수 없다.

10)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은 소지할 수 없다.

11)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은 소지할 수 없다.

바. (소지품 검사)

1)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3)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4)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5)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조치 후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6)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 7) 소지품 검사를 거부 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당사자의 거부가 있는 경우 주위 학생 및 목격자, 교원의 진술로 처벌할 수 있다.

사. (용모)

- 1) 학생은 외모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2)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 3) 학생의 두발은 자율로 한다. 다만, 두발로 인하여 타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는 피해가 없도록 지시할 수 있다.
- 4)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붙임4]’으로 정한다.
 - 가) 등하교시에 교복을 착용하며(부득이한 경우 교복과 유사한 재질의 바지를 입을 수 있음),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나) 복장의 부착물(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 다) 교복(동복·하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5) 피어싱 등 혐오감을 조성할 수 있는 액세서리 착용은 하지 않는다.
- 6) 신체에 문신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7) 교외에서 사용하는 신발은 운동화나 학생용 단화로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사용하며, 샌들 및 슬리퍼 등은 금지한다.

아. (폭력예방)

-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나)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다) 경찰청 신고 117 등
-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4)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생활안전부(또는 전문상담)교사에게 학급 교체 및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외출)

- 1) 외출이라 함은 등교이후 교문 밖을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외출은 반드시 담임교사(담임부재 시 부담임교사나 학년부장)의 허락을 받아 외출한다.

3) 무단외출(교사의 허락을 득하지 못한 외출)을 하지 않는다.

자.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4)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차.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가 입장지도를 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이 단체모임을 하고자 할 때

2) 실외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2. 교외생활

가. (교외 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수양에 힘써야 한다.

2) 교내·외에서 웃어른을 만나면 예의를 갖춘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대외기관(단체)을 방문 할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른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절대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하거나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

9) 차량 및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은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보호자의 의무) 학생 보호자는 매일 대화 및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이 사항 및 위험징후가 보일 시 담임교사, 상담교사, 경찰, 119, 교육청 등에 알려야 한다.

3. 정보통신

가. (정보통신 윤리)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댓글을 표시할 때의 예절을 갖추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

나. (통신기기 관리)

-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3)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⑦ 시상

1. (종류)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상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가. 학력부문

- 1) 학력상(교과별) : 교과별 정원의 3%로 하되 한 개의 상장에 해당 과목을 기재하고 상품도 1개 교과분만 수여한다. 단, 졸업예정자는 석차연명부의 교과 성적 산출 정원의 7%로 한다.
- 2)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에 특기가 있어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학생.
- 3)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도 단위 이상 경기에서 3위 이상 입상한 학생.
- 4) 기능상 : 과학, 기술 기능이 특출하여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학생.

나. 모범부문

- 1) 모범상 : 교내외 생활이 바르고 모범적이어서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학생.
- 2) 선행상 : 다른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바르고 착한 일을 한 실적이 있으며 정의감이 강한 학생.
- 3) 봉사상 : 학교와 이웃,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상부상조한 공이 있는 학생.
- 4)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학생.

다. 근면부문(졸업예정자에 한함)

- 1) 3년 개근상 : 3년간 개근 출석한 학생(결과, 지각, 조퇴가 없어야 한다)
- 2) 3년 정근상 : 3년간 결석 1회인 학생(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환산함)
- 3) 1년 개근상 : 1년간 개근 출석한 학생(결과, 지각, 조퇴가 없어야 한다)

라.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마. 대외상 :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의 장의 추천 또

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3. (시상제외)

가. 모범부문은 교내 봉사(서면사과)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수상에서 제외한다.

단 근면상은 받을 수 있다.(폭력관련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징계를 받은 자로 함).

나. 가항 관련하여 징계 당해 연도만 수상에서 제외되며, 학년도가 바뀌면 수상이 가능하다.

⑧ 생활교육 및 징계

1. 생활교육

가.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학교 현장교육 시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나.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진로지도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진로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다. (교외생활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라. (훈육·훈계방법)

1)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교육벌을 가할 수 있다.

2) 교사는 신체 및 도구를 사용하여 체벌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 생활 관련 및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학생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훈육하도록 한다.

나) 교육적 벌을 내릴 수 있다. (반성문, 명심보감, 청소 등)

다) 사회가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도할 수 있다.

라)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반성할 수 있는 방법을 교사는 고안하고 실천해야 한다.

3) 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마.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1)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운영 규정: 붙임5]를 둔다. 단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당연직), 학생생활안전부장을 부위원장(당연직)으로 하고, 교무혁신기획부장, 상담교사, 학년부장, 보건교사 등 생활교육과 관련된 교사위원 6명이상으로 구성한다.

3)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징계원칙)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장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4)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6)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7)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 (징계의 종류)

- 1)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학교 내의 봉사
 - 나) 사회봉사
 - 다) 특별교육이수
 - 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2)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 3)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4) 출석정지 기간의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5)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라. (징계의 방법)

- 1) 학교 내의 봉사
 - 가) 학교환경 정리활동
 - 나)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 다)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 2) 사회봉사
 -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3) 특별교육이수
 -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라)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마)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
- 4) 출석정지
 - 가)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진술권의 보장)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 4)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가)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 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 다)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바. (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 1) 학생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2)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3)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4) 위반 학생 및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심 청구서를 검토하고 재심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 5) 재심은 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사. (징계의 기준)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지4]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 2)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3) “학교 내의 봉사”와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방법

가. (방침)

- 1)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 2)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조치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3) 단계별 조치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문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4)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성찰교실 등의 대안적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다.

나. (단계별 운영 방법)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담 및 경고 :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 2) 교실 안 지도 :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당교사는 교실 내에서 학생을 격리한 후 수업을 진행한다.
- 3) 교실 밖 격리(Time-Out) : 교실 내에서 교사의 지도로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성찰교실로 이동시켜 성찰교실 담당자가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해당 수업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한다.
- 4)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 : 성찰교실 프로그램 이행 후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관리자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면담한다.
- 5) 징계 :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 6) 지역교육지원청 연계 교육 : 사회봉사 이상 징계 시 징계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성찰교실 운영

가. (목적)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격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성찰교실을 운영한다.

나. (담당자)

- 1) 성찰교실 운영의 책임자는 교감으로 하고, 담당자는 교장이 지정한 부장으로하며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다.
- 2) 교실에서 성찰 교실로의 학생 이동은 학교관리자, 전문상담자 등이 담당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교 내 연락체계를 만든다.

다. (설치 장소) 성찰교실은 Wee클래스, 별도 교실, 교장실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라. (교육활동 내용)

- 1) 성찰교실의 교육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상황 파악 활동 : 학생이 교실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기술한다.
 - 나) 기본 상담 및 훈육
 - 다) 해당 교과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실시

라)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마) 자기행동이행계획서 작성

바) 전문상담자와 연계 활동

1) 성찰교실 활동 사후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상황 파악 활동 시 학생이 자신이 겪은 상황과 관련하여 자기의 생각을 교사에게 전달하는 ‘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 칸을 만들어 작성하게 한다.

나) 성찰 교실 관리자는 학생이 작성한 것을 해당 교사에게 전달, 필요시 교사의 답글을 통한 상호이해를 증진한다.

다) 성찰교실 담당자 혹은 학교 관리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교육적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⑨ 출결

1. (출결사항)

가.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재입·편입·전입·재취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기간은 연간 1주일 이내, 국외체험학습 또는 교환학습은 연간 1개월 이내로 한다. 단, 감염병 위기 등 상위 지침에 의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등

6)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결석하는 경우

라.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마.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바.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사. 위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만 처리한다.

자.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차. 재입·편입·전입·재취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2.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다만,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 할 수 있음.

3. (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나.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다. 3년간 결석1회 이내인 경우는 정근으로 한다.

4. (결석의 종류)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 가)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나)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한 경우

나. 미인정 결석

-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다.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⑩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1.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나.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 라.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마.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바.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사.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아.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2.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가.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라.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3.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 가.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나.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다.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심의 및 결정)

- 가.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5. (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6. (교육 및 안내)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장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징수

제32조(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징수) 학교운영지원비는 관할청의 지침에 의거 학부모와 협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징수하며, 학교교육 과정상 필요한 기타 비용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징수한다.

제12장 체험학습

제33조(체험학습의 승인)

-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승인신청서를 3일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5. 국가 또는 교육청 지침에 의거한 감염병 위기 단계에 따른 가정 학습
- ③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단, 감염병 위기 단계에 따른 가정학습으로 인한 체험학습 기간은 상위 지침에 의거 한시적으로 조정 가능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휴가 중 실시를 권장하며, 휴가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3장 특수교육대상자

제35조(장애학생 인권보호)

- ① 장애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 ②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는다.
- ③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개별화교육지원팀)

- ①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4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7조(학교운영위원회) 초·중·등 교육법 제31조와 시행령 제63조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전담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두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39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 ① (목적)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옥천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옥천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교권보호책임감(교감)은 교육 활동 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겸임을 금지한다.

1. 위원장

가.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2. 위원

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나. 교원 전출, 학생 졸업 등으로 위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기존 위원의 직(자격 또는 업무고려)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명할 수 있다.

라. 교원위원은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교감 및 간사는 위원 구성이 불가하다.

3. 간사

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갈등 조정 역량이 있는 교원으로 선임한다.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겸임 금지한다.

④ 위원회는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옥천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붙임6]으로 정한다.

제40조 (학교주관교복구매)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를 시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 본교 동복 및 하복 사양서”에 따른다.

제15장 학칙 개정

제41조 (학칙개정 절차)

-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개정 위원회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개정한다.

부 칙

- ①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본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학칙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및 목적) ① 헌법 및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옥천중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정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이 규정은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를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학업중단예방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제28조2항·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속려제 운영 관련 제반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장이 위원장(당연직) 직을 수행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심의 안건을 상정한 업무담당 교사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위원회 성격을 고려하여 교감, 교무혁신기획부장, 학생생활안전부장, 상담교사, 학적담당교사로 구성하며 상담교사와 학적담당교사는 위원회 간사 직을 겸임한다.

④ 외부위원은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중에서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역할(①~④)에 해당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의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정기)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면제 등 신청 심의를 위해 개최(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미개최 가능)

- (임시)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개최

※ 유예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해당 학년 취학(교육)의 의무를 1년(해당 학년도 말까지)의

범위 안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기존 유예자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 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의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타)

-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위원회 위원의 제안이 있을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의 1/2 이상 참석과 출석위원의 1/2 이상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붙임 2]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라 칭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재취학 및 편입학 등의 학년을 결정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교감이 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위원 4인(교무혁신기획부장, 선출직 3명), 학부모회 임원 중 1인, 교육 관련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에 의거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② 위원회는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

1. 평가 대상
2. 평가 방법 및 도구
3. 이수인정 기준
4.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이 심사를 신청할 경우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심사를 신청할 경우
3.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던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5. 재취학 및 외국국적 학생의 취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 일부 서류 미비 및 중복학년 수학 등으로 학년 결정이 필요할 경우,
단, 학력 증빙이 불가능한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따른다.

제8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①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평가의 경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하고, 교과목별 90점 이상 취득을 조기 이수 기준으로 하되, 위원회가 평가 내용 및 방법, 이수 기준은 최종 결정한다.

② 재취학 및 편입학 대상자의 경우, 해당 학년의 학업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평가 방법 및 이수 기준을 결정하되, 평가 대상자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령, 훈령, 규칙, 규정 및 도교육청 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붙임 3]

옥천중학교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자치 능력과 자주적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해 학생회 정·부회장의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에게 있다.

제3조 (피선거권자)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바르며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 ② 입후보자의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1. 생활규정을 위반하여 학교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 ③ 출석율이 90%이상인 자

제4조 (선거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5조 (선출임원)

- ① 학생회장 1인(2학년), 부회장 2인(1,2학년 각 1인)을 선임한다.
- ② 2학년 중 최다득표자는 학생회장, 차점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제6조 (임기)

- ① 정·부회장 임기는 다음 학년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1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이 궐위될 때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선거 시기) 정·부회장은 학년말에 선출한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후보로 출마하지 아니한 1,2학년 반장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 ③ 단, 반장이 입후보하였을 경우 부반장이 대신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시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시무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시무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6. 기타 선거에 관한 시무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 (선거일공고) 선거일은 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일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10조 (입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 ①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권자 20인(1,2학년 포함)이상, 교사 2명(담임교사 포함) 서명 날인이 된 추천서 1부와 입후보 합동 소견 요지1부는 제출한다.
- ② 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즉시 발표한다.

제11조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공고일로부터 투표 당일까지로 한다.
- ② 선거운동은 선거벽보 부착, 입후보 학견회, 방송 또는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발표를 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선거벽보의 규격, 게시물의 매수, 게시 장소의 지정과 각종 연설회의 일시와 횟수, 시간, 불법 선거운동 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입후보자와 선거권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킨다.
- ③ 선거 기간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 및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와 관련하여 헐박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
 2.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금품을 이용하여 선거권 자를 매수하는 행위
 4.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투표용지 제작)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1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2부 작성 비치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1일전까지 투표용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투표)

- ① 투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 ② 투표 방법은 선거인 명부 날인 → 투표용지 배부 → 투표용지 투입 순으로 한다.
- ③ 기표는 준비된 기표 용구로 후보 중 1팀에게만 기표한다.
- ④ 투표 참관인은 1,2학년 각 학급 반장 및 부반장으로 한다.

제14조 (개표)

-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선거지도위원(민주시민자치부 교내계 담당교사)과 각 후보자가 지명한 개표 참관인의 입회 아래 개표종사원이 한다.
- ② 개표 종사원은 각 학급 반장으로 한다.
- ③ 개표 참관인은 각 후보 마다 2인으로 한다.
- ④ 개표 시 다음과 같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간주한다.
 1. 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것
 2. 기표하지 않았거나 여러 곳에 기표한 것
 3. 어느 후보에 기표했는지 식별이 곤란한 것
 4. 기표가 아닌 이름을 쓰거나 문자로 표시한 것

제15조 (당선자)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 ②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제16조 (이의신청)

- ①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도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접수된 이의 신청은 학생회 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7조 (당선무효) 선거운동기간 중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8조 (기타) 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옥천중학교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옥천중학교 학생으로서의 정서와 품위를 갖추고 단정한 몸가짐을 유지하도록 하여 원만한 학생활동을 유도하고, 신입생 및 재학생의 교복 구매 시 교육부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학교주관구매를 실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제2조 (방침)

- ① 신입생 배정 후 교복 구매 방식 ‘학교주관구매제도’ 를 사전에 알린다.
- ② 학교주관구매를 위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 ③ 학교주관구매 가격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가격 상한선 이내에서 구매하도록 한다.
- ④ 교복디자인은 기존 본교 교복디자인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할 경우는 1년 이전에 디자인을 공개한다.
- ⑤ 학교주관구매 계획 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⑥ 교복은 신입생에게 입학 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복 규정과 사진, 재질 등 사양서를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⑦ 학교주관구매의 입찰은 품질과 가격 심사를 통과한 최저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교복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대표(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포함) 등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학교장, 행정실장, 교복업계 이해 관계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④ 간사는 업무(유사업무) 담당교사로 한다.
- ⑤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 운영 규정[별지 2]에 따른다.

제4조 (교복 규정)

- ① 교복디자인은 본교 현행 교복디자인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하복의 경우 [별지 3]의 하복 디자인 사양 대신에 생활복 디자인 사양으로 대체하며,

하복 디자인 사양을 희망할 경우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지 3]의 사양서를 참고한다.
- ④ 교복 규정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교복선정 위원회에 통보한다.

제5조 (계약 조건)

- ① 계약 시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무상 A/S 기한(1년 의무기간), 처리과정 등
 - 2.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 규정에 따른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지급각서 등 제출
 - 3.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 4.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5. 향후 학생들의 품목별 단품 구매 가능 여부 제출
 - 6. 교복 ‘개별품목별 단품 구매 시 단가표’ 제출

부 칙

- 1. 이 규정은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 교복선정위원회 결성 및 운영은 시행일부터 개시된다.
 - ※ 추진 일정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의 제 3조는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옥천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교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교복디자인 및 사양 선정

- ② 교복 품질심사 기준 설정 및 품질심사 실시
- ③ 교복 제작 감독 및 납품 시 검사
- ④ 구매 결과 평가 실시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표(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포함) 등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학교장, 행정실장, 교복업계 이해 관계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④ 간사는 업무(유사업무) 담당교사로 한다.

제4조 (회의개최) ① 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교복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입찰 공고 이전에 연 1회 이상, 입찰 공고 후 연 1회 이상, 총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 ③ 정기회는 교복구매계획, 교복 디자인 선정 및 공개, 입찰 공고 관련, 품질 심사, 가격, 납품 사업자 선정, A/S, 하자이행 등 교복 구매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한다.
- ④ 임시회는 교복과 관련하여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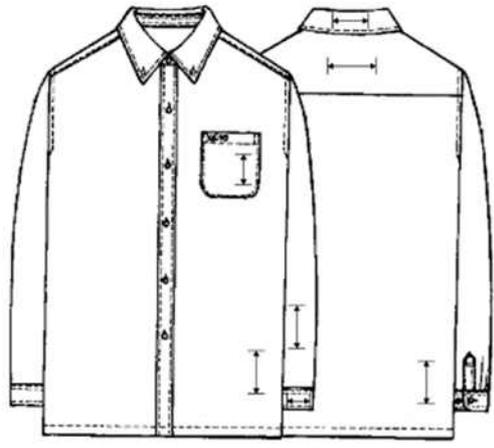
제5조 (개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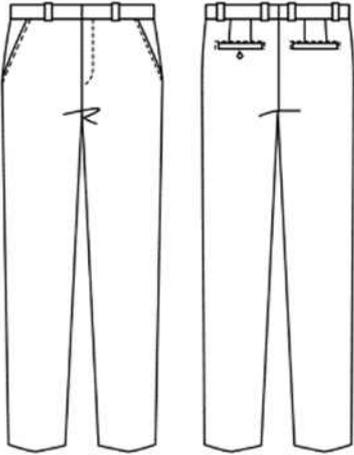
-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기타) ①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② 교복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교복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한다.
- ③ 교복 구매 입찰 선정 시 품질 심사를 위해 교복선정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 품질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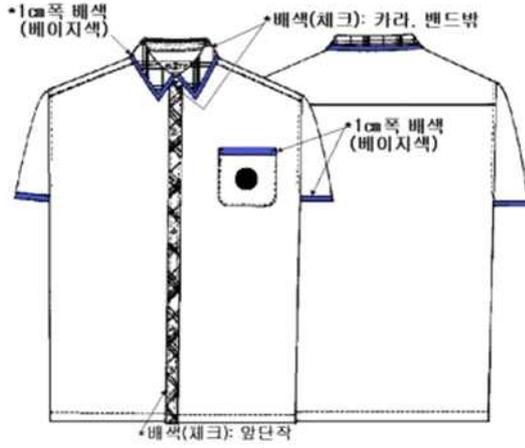
교복디자인 사양서

동복디자인 사양서		
재 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 체크/곤색 ▣ 혼용율 : 몸판=W80N20 배색=W50T47U3 ▣ 마 크  ▣ 단 추 
안 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 회색 ▣ 혼용률 : T100
와 이 셔 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 스트라이프 ▣ 혼용률 : T65C35 ▣ 단 추 : E04 11mm
넥 타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 스트라이프 ▣ 혼용률 : T100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니 트 조 끼</p>	<p>+5 ■ 쪽 가운데 배색 (흰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 진회색/흰색 ■ 혼용률 : T50A50 ■ 마 크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남 바 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 곤색 ■ 혼용률 : W50T47U3 ■ 단 추 : 진곤색

하복디자인사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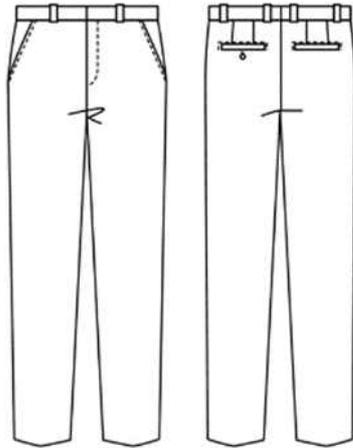
남
와
이
셔
츠



- 디자인 : 아이보리/체크/베이지
- 혼용율
 걸감=T70R30
 배색:W50T50
- 마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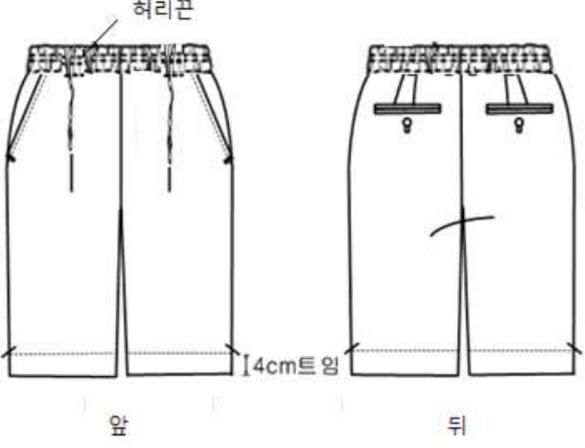


남
바
지



- 디자인 : 베이지
- 혼용율 : T93U7
- 단 추 : 진베이지

생활복 디자인사양서

생활복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판 : 진곤색 기능성 - 배색1 : 줄지 - 배색2 : 하늘색체크배색 (혼용율 : P100)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Y카라 - 가슴 아웃 오각주머니 - 카라끝+아시겔+단작+소매/주머니/어깨/등요크파이핑 +트임안 : 줄지배색 - 아시안 : 하늘색체크배색 - 이름표후다 : 진곤색 주머니 중앙에 학교마크 ■ 현색 셔츠단추 11mm ■ 마 크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반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곤색 폴리 스판 (혼용율 : P/PU 92/8)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 고무줄 - 밑단 트임형 - 원턱 반바지

※ 재킷, 와이셔츠(춘/추, 하), 조끼의 왼쪽 주머니 위쪽에 옥천중학교 학년별 색상에 맞는 이름표를 누벼 박는다.(단, 학생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탈부착 이름표를 패용할 수 있다.)

옥천중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② 학생 징계에 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교감을 위원장(당연직), 학생생활안전부장을 부위원장(당연직)으로 하고, 교무혁신 기획부장, 상담교사, 학년부장, 보건교사 등 생활교육과 관련된 교사위원 6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로 한다.

제4조 (회의개최) ①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 또는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 개최 시, 해당 학생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개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기타) ①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의록(결과보고서)을 작성하며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별지 4]

징계 기준

항	내 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교원의 정당한 교육방법에 불응한 학생	○	○	○	○
2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3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4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5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	○	○	○
6	용모 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	○		
7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학생	○	○		
8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	○	○	
9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휠체어 등 제외) 등을 운전한 학생	○	○	○	○
10	범죄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11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12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	○	○	
13	일과 중 담임교사의 허가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한 학생	○	○		
	미인정 지각·조퇴·결석을 10회 이상한 학생	○	○		
	미인정 결석을 5일 이상 10일 미만한 학생		○	○	
	미인정 결석을 10일 이상한 학생			○	○
14	무단가출(외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15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	○	○	○
16	담배, 술 등을 처음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담배, 술 등을 상습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1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18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19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20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한 학생	○	○	○	○
21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협하게 한 학생	○	○	○	○
22	평가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	○	○	○
23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누설한 학생			○	○
24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	○	○	○
2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	○	○	○
26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 받은 학생	○	○	○	○
27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	○	○	○
28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 학생			○	○
29	마약, 향정신성 약물류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30	교내의 물건·시설물 등을 방화한 학생			○	○
31	도박(사이버 도박 등 포함)을 하거나 도박행위를 권유한 학생	○	○	○	○
32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3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
34	당해 연도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 기준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으면 한 단계위로 가중하여 징계함		○	○	○

※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붙임 6]

옥천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15조제7항에 따라 옥천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천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옥천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교권보호책임관(교감)은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겸임을 금지한다.

1. 위원장

- 가.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라.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2. 위원

- 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나. 교원 전출, 학생 졸업 등으로 위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다.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기존 위원의 직(자격 또는 업무고려)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명할 수 있다.
- 라. 교원위원은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교감 및 간사는 위원 구성이 불가하다.

3. 간사

- 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갈등 조정 역량이 있는 교원으로 선임한다.
-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겸임 금지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1.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내부) 또는 위촉(외부)하고 이름, 임기, 자격(교원, 학부모, 변호사 등) 등을 기재하여 내부 결재한다.
 - 가.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다.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위원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 해촉을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1.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 요청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1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화와 문자 병행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당사자의 출석)

1. 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 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출석통지서에는 회의 개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당사자가 출석 거부 시 서면 진술이 가능함을 안내하며, 서면 진술도 거부 시 진술 포기서를 받거나 진술을 거부 하였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의결)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1.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 조정의 신청)

1.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절차를 안내하고 분쟁조정 의사를 확인한다.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안발생보고에 분쟁조정 신청 여부를 표시하고, 제2항에 따른 분쟁 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 조정의 개시)

1. 위원회가 제12항에 따라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 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 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 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분쟁 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
 - 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다. 분쟁 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분쟁의 성질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조정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끝낼 수 있다.
 - 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 조정이 성립한 경우
 - 나. 분쟁 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 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 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청북도교권보호 위원회에 2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5. 분쟁조정 불성립 시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 2차 분쟁 조정 신청 외, 심의 절차(교육 활동 침해 여부 판단, 학생 처분 및 교사보호조치 권고) 진행을 위한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추가 개최도 가능하다.

제13조(분쟁 조정의 결과 처리)

1. 위원회는 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가.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1) 분쟁의 경위
 - 2)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나. 조정의 결과
2. 제1호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조치의 권고)

1.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가. 특별휴가(교권침해교원지원휴가), 공무상 병가, 병가, 연가 허가
 - 나. 응급처치, 병원후송, 공무상요양 신청 안내 등
 - 다.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요양 신청 안내 등

제15조(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의 심의)

1. 각 당사자의 증거에 의하여 가해행위의 여부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2. 각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성, 경험적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위원회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당사자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직접 관찰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다.
3.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에 대한 판단 여부는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4.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조치 없음으로 종결이 가능하다.

제16조(조치결정의 기준)

1. 조치 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른다.
 -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나.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다. 학생과 피해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라. 피해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마.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제17조(조치결정 추가 판단 기준)

1.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각호에 해당하는 추가 판단 적용 여부를 의결한다.
 - 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한다.
 - 나.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한다.
 - 다. 학생이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조치한다.

제18조(조치결정의 방법)

1. 조치결정은 제16조제1항1호에 따라 0~5점 척도로, 제16조제1항2호,3호에 따라 0~3점 척도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항목별 총점에 해당하는 조치를 선택한다.
3. 봉사 또는 사회봉사로 의결하는 경우 총 시간을, 출석정지로 의결하는 경우 총 일수를 함께 결정한다.
4. 전학으로 의결할 경우 반드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부가한다.
5.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로 의결하거나 부가하는 경우, 총 시간(횟수)도 함께 정하고 보호자 참여시간(횟수)도 함께 결정한다.
6. 10시간 이하의 학생(보호자) 특별교육은 교내 Wee클래스에서도 가능하다.

제19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1.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학교에서의 봉사
 - 나. 사회봉사
 - 다.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라. 출석 정지
 - 마. 학급 교체
 - 바. 전학

제20조(회의록의 작성)

1.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3. 위원들의 발언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21조(조치의 통지)

1. 위원장은 조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2.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3. 학교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결과통지서를 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제22조(조치기한)

1.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한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조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실시한다.
2. 전학의 경우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실시한다.
3.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제23조(후속조치)

1. 당사자의 성실한 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재발 방지조치 및 추수지도를 실시한다.
2. 피해교원에게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과 치유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참여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 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 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